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62
----------	------

제출연월일: 2023. 10. 6.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1. 7. 20. 제정, ‘23. 7. 21.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의 책무에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 신설(안 제4조)
- 나.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 신설(안 제5조의2)
- 다.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 대상 및 개방시간 구분 신설(안 제12조)
- 라. 유료화장실 신고 처리 절차 명확화(안 제16조)
- 마.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 삭제(안 제17조)
- 바. 미신고 유료화장실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제1호)
- 사.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서식 안전관리시설 설치내역란 추가(안 별지 제 1호서식)
- 아. 총칙 등 장 항목 삭제
- 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24 (제259회-복지건설위제1차부록)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따로 붙임

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21조
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8조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 평가: 개선사항 없음(가족복지과-33211호, 2023. 8. 21.)

라. 입법예고: 2023. 8. 7. ~ 8. 28.(21일간) / 의견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공중화장실등이란”을 “공중화장실 등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조례”를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앞에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설치기준)”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내벽은 타일”을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필요시”를 “필요시”로,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올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 제외)

나. 구청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관리 시설의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에 대하여는”을 “자에게”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관리인의 교육)”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를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를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를 “정비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해야 한다.

제10조 중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은”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를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해야”로, “기록하여야”를 “기록해야”로 한다.

제11조 앞에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개방하여야”를 각각 “개방해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미만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 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중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한다.

제14조 앞에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를 삭제한다.

제14조 본문 중 “정하는 행사”를 “행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감안한”을 “고려하여”로,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을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으로 하고, 같은 호 및 제3호 중 “설치하여야”를 각각 “설치해야”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제16조 앞에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 앞에 “제6장 과태료 부과 등”을 삭제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촬영장비 점검 내역란 다음에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수)	CCTV (설치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등은 제5조의2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9개월까지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때	법 제21조 제1항	100	150	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가. 법 제11조 제4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 제5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4호	10	20	30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 제3항	5	10	2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삭 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공중화장실등</u> 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u>공중화장실등</u> 이란----- ----- ----- -----.
제3조(적용의 범위) ①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법 제3조제2호에서 “ <u>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u> ”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과	제3조(적용의 범위) ①----- 각호----- ----- -----. ②----- <u>조례</u> ----- ----- ----- -----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신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하는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 공중화장실 등을 ----- 유지·관리해야 하며, -----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 노력해야 한다.

<삭 제>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

-----.

1. -----

-----.

- 2. 바닥과 내벽은 타일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을 준용한다.
- 6.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상 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 2. -----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
- 3. 필요 시 -----

--.
-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올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 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개방 화장실
-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
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
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
용대상 제외)

나. 구청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
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
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
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관리 시설의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
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
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
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
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

-----.

②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

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1. ~ 4. (생략)

②----- 자에게 -----

-----.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

----- 제
공해야 -----.

-----.

-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생략)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 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향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 -----

-----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

1. (현행과 같음)
2. -----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
3. -----
----- 정비해야 -----.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해야 한다.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해야 -----
----- 기록해야 -----.

<삭 제>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 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구청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9조에 따라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2. 구청장이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

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 개방해야 -----.

②-----

개방해야 -----.

-----.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미만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

----- 자에게 -----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 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

-.

<삭 제>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
----- 행사 -----

-----.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① -----
----- 각 호-----.

1. -----
----- 고려하여 -----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
을 설치해야 ---.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
이 구분되도록 - 설치해야 -
-
3. -----
----- 설치해야 ---.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
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
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

치하여야 한다.

②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유료 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 3. (생략)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는 표지를 부착해야 ----.

②-----
----- 지체 없이-----

-----.

<삭 제>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

----- 각 호-----
----- 제출해야 -----.

-----.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삭제

제6장 과태료 부과 등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근거법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의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

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를 수리(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⑤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

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 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 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3항·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3. 작성자

- 소 속: 환경위생과
- 직 급: 지방환경주사
- 성 명: 손혜은
- 연락처: (052)290-3721